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위 '19년 '20년 경영평가 A등급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퇴직공제부금 미납 방지 및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고용노동부 cw 건설근로자공제회

제도 소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란?

퇴직공제부금 미납 방지 및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5.27 시행된 제도로서, 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 발생 시 도급인(발주자 포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납부특례 사유 : 서면합의, 회생·파산·공동관리절차 개시 등 (제도운영절차 '납부특례 사유' 참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17조

퇴직공제부금 납부주체

개정 전 공제가입 사업주

개정 후 납부특례 사유 발생 시, 도급인 (발주자 포함)

도급인과 납부특례 적용사업장의 의미

도급인	· (사업주가 원수급인 경우) 발주기관 · (사업주가 하수급인 경우) 원수급
납부특례 적용사업장	'20.5.27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이 없는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 체결 공사) 중 **납부특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 '20.5.27 이전에 입찰공고 한 공사는 납부특례 적용은 받지 않으나, 사업장의 부도·파산 등으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원·하수급 간 공제부금 '대납신청'을 통해 이행함으로써 미납금액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대납신청 불가)

도급인과 사업주의 역할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사업주	근로내역 신고 ※ 공제회에서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의무 발생 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는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납부해야하나, 근로내역 신고 의무(매월 15일까지)는 여전히 사업주(수급인)에게 있습니다.
공통	납부특례사유 발생·변동·소멸 시 공제회 통보

제도 운영절차

① 도급인 또는 사업주는 공제부금 납부특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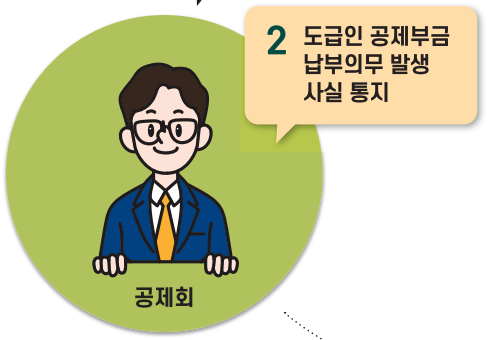

② 공제회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도급인에게 통지합니다.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③ 도급인은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의무 발생 사실을 통지 받은 시점부터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제도 운영절차

납부특례 사유

-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기로 사업주와 **서면 합의**한 경우
- 사업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
- 사업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 사업주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도급인의 납부의무의 범위

- **(서면합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도급인 납부금액 결정
- **(회생·파산·공동관리절차, 기타)**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힌 퇴직공제부금비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비용

※ 특례사유 발생일 이전의 미납공제부금에 대해서도 도급인의 직접납부 의무가 발생함에 유의하세요.
(서면합의는 합의 내용에 따름)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기한

도급인이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공제부금 (공제회 통지 이전 확정된 미납금액)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제4항 후단
향후 발생(신고)예정 공제부금 (통보일 이후 발생예정인 공제부금)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제4항 전단
미납부 시 벌칙규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사유 발생 시

접수방법

- 퇴직공제 EDI시스템(wedi.cw.or.kr), 팩스, 우편, 이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제출서류

1.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발생원인 사실통보서 1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최종 도급계약서 1부** (통보일 현재 기준)
3. **최종 원가내역서 또는 산출명세서 1부** (통보일 현재 기준)
4.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통보일 현재 기준)
5.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도급인과 사업주간 서면합의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서면합의서 1부 (합의 당사자, 납부의무 기간·금액 등 명시)
   2. 사업주의 회생·파산·공동관리절차 개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파산선고 결정문, 공동관리절차 개시의결서 중 1부
   3. 기타 사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필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4호)
   4. 도급인의 공제부금 미지급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주가 도급인에게 공제부금을 요청한 관련 공문 등)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변동 사실 발생 시

- 도급인 또는 사업주는 **서면합의의 변경·파기, 회생·파산 등의 취소 등**으로 도급인의 직접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 도급인 또는 사업주가 **변동사실을 공제회로 통보한 시점부터** 공제부금 **납부주체(의무)가** 도급인에서 기존 **사업주로 다시 변경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변동사유가 서면합의 기간 연장 등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납부의무 유지

접수방법

- **퇴직공제 EDI시스템(wedi.cw.or.kr), 팩스, 우편, 이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제출서류

1.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변동 통보서 1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최종 도급계약서 1부** (통보일 현재 기준)
3. **최종 원가내역서 또는 산출명세서 1부** (통보일 현재 기준)
4.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통보일 현재 기준)
5. **도급인 납부의무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도급인과 사업주간 서면합의 변동 등에 의한 경우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서면합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주의 회생·파산 등 폐지에 의한 경우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 결정문, 파산선고의 취소 결정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의결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도급인의 공제부금 지급에 의한 경우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제3호)
      -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공제회 관할 지사·센터

구분	주소	팩스번호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다동, 국제빌딩)	0505-182-8371
서울남부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가산동, BYC하이시티)	0505-182-8380
원주센터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무실동, 한국국토정보공사 원주지사)	0505-182-8379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인계동, 세영빌딩)	0505-182-8373
의정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의정부동, 삼성생명 빌딩)	0505-182-8382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7, 2층 (구월동, 현대해상빌딩)	0505-182-8372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초량동, 현대해상 부산사옥)	0505-182-8374
창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7, 2층 (용호동, 경남무역회관)	0505-182-8383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남산동, ABL대구타워)	0505-182-8375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7층 (치평동,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0505-182-8376
전주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중화산동2가, 전라북도 건설회관)	0505-182-8378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이도1동, 대한항공빌딩)	0505-182-8384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둔산동, 한화생명빌딩)	0505-182-8377
청주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6층 (가경동, 충북지방기업진흥원)	0505-182-8370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자카드제 대상공사 확대 안내

적용일 이후 입찰 공고된(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체결일) 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건설공사

적용일	'20.11.27	'22.7.1	'24.1.1
공공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전체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
민간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공제회 관할 지사·센터

- **서울지사** 02-519-2201~2206
- **서울남부센터** 02-519-2290, 2292, 3394, 2295, 2298
- **원주센터** 033-746-5711
- **경기지사** 031-242-5711
- **의정부센터** 031-876-5711
- **인천지사** 032-446-5711
- **부산지사** 051-462-5711
- **창원센터** 055-264-5711
- **대구지사** 053-755-5712
- **광주지사** 062-352-5711
- **전주센터** 063-244-5712
- **제주센터** 064-721-5711
- **대전지사** 042-525-5713
- **청주센터** 043-232-5711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cw.or.kr)를 확인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